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 ①

국가공사 계약제도의 일반적 이해와 건설보증의 역할

기획부 과장 김형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도산으로 설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고유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나 “저가수주”도 한 몫 하고 있어 조합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행 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5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주제 및 예정일

주 제	예정일
1. 국가공사 계약제도의 일반적 이해와 건설보증의 역할	'08. 10월
2. 저가수주의 기준 및 현행제도의 문제점	'08. 11월
3. 저가낙찰의 실태 및 건설에 미치는 폐해(부도사례 등)	
4. 분리발주의 필요성	'08. 12월
5.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및 설비건설업계의 움직임	'09. 1월
6.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보증제한 및 심사방안	'09. 2월

I. 들어가는 말

완성된 물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일반제조업과는 다르게 건설산업은 특정한 소비자(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도급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목적물이 생산된다. 따라서 누가 계약이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상 “입찰”이라고 한다. 입찰에 의하여 “낙찰”이 된 건설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생산을 시작한다. 대가를 지급

받은 후에는 최종적으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계약과정을 국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가계약법 중 건설산업의 계약과정을 살펴보면 건설보증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국가계약법 일반

1. 계약의 법률상 의미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민법상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계약은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2. 국가계약의 특성

국가계약법 제5조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私인의 지위에서 私인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私경제주체가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법령체계

국가계약제도와 관련한 법체계는 “국가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고시·통첩”¹⁾으로 되어 있다. '95. 1. 5 국가재정의 기본법인 “예산회계법”의 제6장 계약 편을 분리하여 정부계약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이 “국가계약법”이다.

4. 적용기관

국가계약법은 건설교통부, 조달청등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며, 정부투자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령”에서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운용되고 있다. 출자기관, 출연기관등 기타 공공기관은 자체회계규정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할 경우 적용된다.

III. 국가계약 제도의 주요내용

1. 국가계약의 종류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목적물, 계약체결방법 및 계약체결절차 등을 결정한다.

가.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공사계약(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으로 분류한다.

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예정가격 (미)결정에 따른 분류

(가) 확정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통상적인 계약형태이다.

(나) 개산계약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견적가격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완료 후 계약금액을 정확히 산

1) 예규(例規)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행정기관내부의 업무처리 등을 위해 제정된 행정규칙의 하나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법규관련문서 외의 문서를 총칭하는 것을 말함.
고시(告示)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의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함.
통첩(通牒) 행정법상 행정관청이 소관기관이나 직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특정사항을 통지하는 것을 말함.

출하여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입찰 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잠정적으로 정한 후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하는 계약이다.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 구별된다.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에 따른 분류

(가) 총액계약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나) 단가계약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 단가계약의 보증서 발급

○ 계약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이 기재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다.

○ 선급금보증 금액 산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

- 선급금지급요청 일까지의 발주금액(발주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한다.
- 선급금청구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기성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장기계속 계약, 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

(가) 장기계속계약

-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이다.

-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확보의 불확실 또는 곤란 등의 이유나,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한 경우보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활용되는 제도이다.

(나) 단년도 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 연말에 계약 후 사고이월 되는 경우에는 2회계연도에 걸쳐도 단년도계약에 해당된다.

(다) 계속비 계약

- 장기계속계약과 달리 차수별계약이 아닌 1회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비를 명기하고 연부액을 부기한다.
- 계속비 예산은 수년도(최고 5년)에 걸쳐 이행되어야 할 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괄하여 그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이다.

※ 계속비의 연부액 : 계속비 예산에 있어 어느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연부액(年賦額)이라 한다.

□ 장기공사의 보증서 발급

○ 계약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1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기재한 계약보증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서의 금액은 총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 하자보수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선급금 보증금액 산정(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장기계속계약의 선급금은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의무적 선급금 지급률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 장기계속공사의 수수료 환불

공사총액 범위 내에서 매년도의 사업규모를 해마다 새로이 설정하고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예산확보가 불안정하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보증수수료 환불이 발생할 수 있다.

○ 계속비공사의 보증금액 산정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 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어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총액에 대한 공사가 이행된 후에 준공처리한다.

(4)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

(가) 단독계약

계약상대자가 1인인 계약이다.

(나) 공동도급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도급한도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낮은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다.

※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도급 공사의 보증서 발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구성내용이 출자비율의 구성(공동이행방식:실적보완)인지 공사를 분담(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하는 것인지를 유의 있게 심사하여야 한다.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임에도 전체공사금액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다) 주계약자형 공동계약

(1) 개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공동으로 이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전체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 '98. 4.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현재는 민간건설 분야에만 시행되고 있는데 동 제도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2) 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 및 하자담보 책임

• 계약이행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다른 구성원의 계약상 의무이행에 있어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해당 구성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동계약운영요령」에는 공동도급계약 방식으로 공동 이행방식과 분담이행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관련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보증서 발급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제출,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계약자가 일괄제출이 가능하다.

(5) 종합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71조)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7조)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한다.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
정부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업체의 과다응찰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2)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시공능력,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불성실

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이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계약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곤란한 경우 등에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4)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9조)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액 수의계약 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동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소액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입찰제도 일반

가. 공사입찰의 종류

(1) 최저가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시행한다.

(2) 적격심사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시행한다.

(3) 턴키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기위)심사를 거쳐 턴키 입찰로 확정된 공사가 해당된다.

(4) 대안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 중 중기위 심사를 거쳐 턴키입찰로 확정된 공사가 해당되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다.

(5) 기술제안입찰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이다.

(6)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로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이다.

(3) 예비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서 예비가격 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된다.

(4) 예비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의 2%(행정자치부 : 3%)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이러한 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천하여 산술평균한 것이 최종 예정가격이다.

(5)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다.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이 포함되어 않는다.

(6) 예정금액

예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다.

나. 가격과 금액의 구별

(1) 추정가격

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PQ·적격심사)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의 결정 또는 입찰공고에 앞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이다.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추정금액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다.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 : Prequalification)

(1) 개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 전에 미리 공사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대상공사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18개 공종(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 제1호 이외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낙찰자의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낙찰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실공사의 피해가 발생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나. 최저가 낙찰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 최고가치 낙찰제

입찰가격 외에 공사기간, 공법, 사업관리 부문에 대한 기술제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라. 턴키 입찰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이며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보다는 기술·설계경쟁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마. 대안 입찰제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이다

4. 계약의 체결

가. 계약의 성립

-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기명날인한다.
- 3천만원 이하의 계약, 경매에 붙이는 경우 등은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다.
-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가 있다.

나. 계약보증금의 납부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토록 하되 계약의 종류별로 특별하게 적용된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 보증금액 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52조)

○계약보증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을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거나, 100분의 20이상을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미입보 할 수 있다.

○공사이행보증

최저가낙찰제(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서의 납부가 의무이며 공사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한다. 예정가격의 70%미만 입찰 시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의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한다.

5. 하자보수

- 계약이행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진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 하자보수보증의 보증책임 기간

(1)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의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2) 복합공종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국가계약법규칙에서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IV. 맺는 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건설공사 계약은 건설보증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기

준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 및 건설보증은 민간공사 및 하도급 공사수행의 바로미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연쇄도산으로 업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저가수주”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국가계약에 있어 저가수주(원도급) 공사는 PQ에 의한 일정심사(효율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를 거친다거나,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만 시행하고 있어 저가수주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 저가수주(하도급) 공사는 이러한 기능이 전무한 상태이다. 최근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에서 저가수주 공사에 대한 스크린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공제조합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최선의 균형점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저가수주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있어 공제조합의 노력과는 별개로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로 끝내고자 한다. 건설관련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있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수직적 원·하도급관계를 수평적·대등적 거래관계로 전환하는 일이다. 국가계약법(예규·고시)에서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도입과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법제화가 그래서 필요하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1.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2008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사 강습자료)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ttp://nafis.mofe.go.kr>)